

Question & Answer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환경관리인 겸임 선임 관련

Q 제지 제조업(직원수 73명, 24시간 가동)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기사)로 선임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대기 환경분야의 관리자로 겸임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기중 사업장 업체입니다.

A 3년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산처리시설 방지시설의 응축수, 폐수인지? 폐기물인지?

Q 당사는 동봉을 제조하는 업체로 열처리 후 산처리시설이 있으며, 산처리시설은 용수의 혼입이 없으며 순수 황산 10%(pH 1이하)를 입고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생산공정 자체는 폐수배출시설은 아닙니다.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산미스트를 엘리미네이터 및 PP망을 이용하여 응축 제거하고자 합니다. 미스트가 응축되어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그 양이 100리터/일 이상일 경우 폐수인지 폐기물인지 여부· 만일 폐수라면 응축수의 pH가 2.5이하일 경우에도 폐수로 봐야하는지 여부?

A 산미스트를 엘리미네이터 및 PP망을 이용하여 응축제거하는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한 폐수배출시설(77.산업시설의 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 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m³/시간)에 해당되며 배출시설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pH가 2.5이하일 경우에도 폐수에 해당되며 다만, 폐수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도 가능하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관리(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 서식관련 문의

Q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사업장 관리대장의 서식을 보면 별지 제 16호 서식으로 크기가 364mm × 257mm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A4지인 297mm × 210mm의 크기로 작성을 하여도 가능한지? 결재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결재를 하지 않고 전산으로 3년동안 보관만 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은 적법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면 별도로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적법처리시스템)으로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전산 기록을 출력 후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련 정보(법령해석, 환경부의 주요정책 등)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사업장폐기물 전용 사이버상담

실, (waste.me.go.kr)]를 구축하여 05.10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세륜시설 폐수 및 세륜시설 슬러지 처리방법

Q 건설현장에서 세륜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순환식으로써 증발하면 물채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전슬러지는 수분85%이하로 햇빛건조하여 양질토와 50%이상 혼합하여 매립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다시 세륜시설로 유입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현장 슬러지의 용출시험 의뢰결과 전 항목이 불검출되어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 판정을 받았습니다.

1. 세륜기에서 나오는 세륜수를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세륜기의 슬러지를 현장 내에서 85%이하로 햇빛건조시킨 후 당현장의 양질토와 50%이상 혼합하여 도로 노반의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렇지 않으면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중간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A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일련번호 81번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해당되는 세륜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자가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수분85%이하로 햇빛건조한 슬러지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하므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이행질의

Q 님이 아니라 '0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수검받게된 업체이며, 또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입니다. 당사의 경우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이며, 산업안

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를(PSM) 작성하고 있으며,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경우 정기·수시검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등일지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의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TMS 부착대상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 관련

Q 측정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소각로와 같은 소각시설의 경우 기준 초과인정시간이 각각 정하여져 있습니다.(가동개시 및 재가동시 5시간, 가동중지시 3시간) 그러나 최근 추가부착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소각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4.굴뚝자동 측정기기를 붙인 사업장에 대한 특례규정 중 폐수소각시설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인정시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에 한하여 가동개시·재가동 및 가동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곤란한 시설(방지시설의 효율, 공정의 특성 등을 감안)에 대하여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귀하의 의견은 측정자료 전송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